

체험산책로 설치 및 관리 협약서

사업명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체험 산책로 조성사업

대구대학교 비호동산 및 인근 숲길에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 산책로 조성과 관리를 함에 있어 대구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함)과 설치 시행자인 대구생명의숲 대표자(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산책로의 설치 목적) 대구대학교 비호동산 일대에 조성된 산책로 일부의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과 노약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연생태 관찰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제2조 (시설물의 설치)

1. “을”의 요청에 의해 산책로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 할 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후 “을”의 책임 하에 시설물을 설치한다.
2.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3. 재료 및 설치는 전문가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된 설계 도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장소 제공 및 시설물 안전조치)

1. “갑”과 “을”은 시설물을 설치할 위치 및 범위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갑”은 대학장기발전계획 등에 지장이 없을 때 “을”에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한다.
2. 설치장소는 “갑”과 “을”이 사전 협의 및 현장 답사 후 선정하고, 토지 미 매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설치한다.
3. 재료 및 설치는 전문가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된 설계 도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귀속) “을”은 시설물 준공과 함께 “갑”에게 기부채납 한다.

제5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1. “갑”은 정기정비, 수시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시설물의 관리를 책임진다.

2. 구조물의 안전상태 확인을 위한 정밀점검 등이 필요할 시 “갑”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하고 “을”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시설물에 의하여 사용자의 안전이 저해되는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갑”과 “을”은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 후 시공 및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될 시에는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철거 및 이설)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을”에게 철거 및 이설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철거 및 이설 또는 “갑”에게 위임 할 책임을 진다.

1. “갑”의 대학 장기발전계획 등으로 부지 사용용도가 변경되어 지속적인 존치가 불가할 경우
2. 노후, 구조적 결함 등으로 보수가 불가하여 폐기하여야 할 경우
3. 지속적인 존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을”이 승낙한 경우

제7조 (위약 시 조치) “갑”과 “을”은 공히 본 협약을 엄수할 것이며, 만약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내용)을 사전 협의한 후 본 협약의 파기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기 타)

1. 본 협약이 “갑” “을” 상호 자유의사에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2007년 11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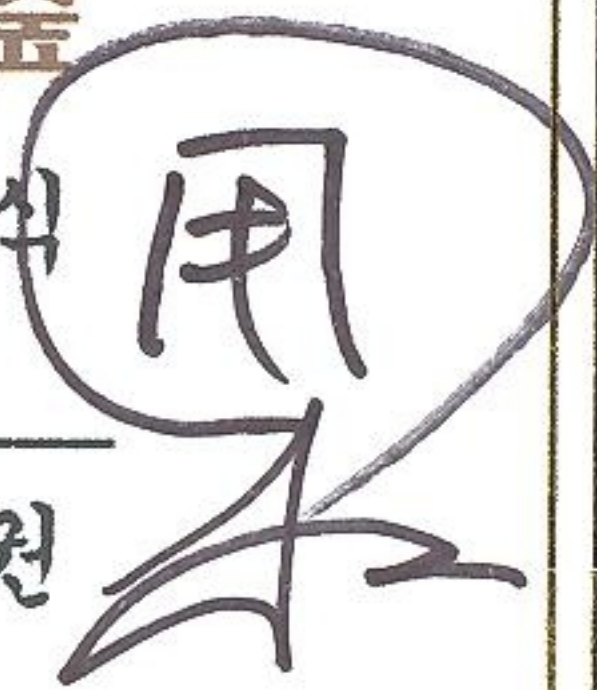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 장 이 용 두



 **대구생명의숲**

공동대표 김응식


강판권

하종호